

안전인증대상의 제품분류별 전기용품

[별표2]

안전인증대상의 제품 분류별 전기용품(제3조 관련)

전선 및 전원코드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가. 합성수지절연전선류	2000년 7월	가. 합성수지절연재를 사용한 것	2003년 7월
(1) 합성수지 절연전선(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100mm^2$ 이하인 것에 한한다.)	1일부터	(1)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100mm^2$ 이하인 것)	1일부터
	2003년 6월	(2) 케이블(공칭단면적이 $100mm^2$ 이하인 것)	
	30일까지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	
(2) 비닐외장케이블(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mm^2$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고무절연재를 사용한 것	
(3)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mm^2$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1) 절연전선	
(4) 비닐캡타이어케이블(도체의 공칭단면적 $100mm^2$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케이블	
(5) 단심비닐코드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	
(6) 연합비닐코드		(4) 용접용케이블	
(7) 기타비닐코드		(5) 실리콘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	
(8) 캡타이어드코드		(6)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케이블(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95mm^2$ 이하인 것)	
나. 고무절연전선류		다. 전원코드 세트	
(1) 고무절연전선(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mm^2$ 이하, 절연체가 합성고무인 것을 포함한다.)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2)고무외장케이블(도체의 공칭단 면적이 $100mm^2$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3)고무캡타이어케이블(도체의 공칭단면적이 $100mm^2$ 이하, 선심이 7심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4)대편고무코드</p> <p>(5)원편고무코드</p> <p>(6)기타고무코드</p> <p>(7)용접용케이블(도체의 공칭단 면적이 $100mm^2$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비고)용접용케이블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이 100V 이상 600V이하인 것에 한한다</p>			

전기기기용 스위치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가. 전기기기용 스위치류(정격전류 가 30A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제어용스위치와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p> <p>(1)텀블러스위치</p> <p>(2)로타리스위치</p> <p>(3)눌름보턴스위치</p> <p>(4)풀스위치</p>	<p>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p>	<p>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1)일반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로타리스위치, 레버스위치, 로커스위치, 푸시버튼스위치, 푸시풀스위치, 자동복귀스위치 등으로 기기내에 조립되어 사용 되는 것)</p> <p>(2)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p>	<p>2002년 7월 1일부터</p>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5)펜던트스위치(던스위치를 포함 한다.)</p> <p>(6)타임스위치(자동적으로 반복 계속하여 개폐하는 것을 제외 한다.)</p> <p>(7)광전식자동점멸기</p> <p>(8)기타점멸기</p> <p>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전동기용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다)</p> <p>비고)정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p>		<p>나. 전기기기용 차단기(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의 내부 또는 외곽에 부착되어 기기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하인 것)</p> <p>다. 전자개폐기(차단전류 6kA 이하인 것)</p> <p>비고)2차회로제어에 사용하는 것과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p>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가. 농형3상유도전동기(정격전압이 100V 이상 380V 이하이고, 정격출력이 3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시간 정격인 것, 극수 변환용, 방폭형, 방적기계용, 금속압연기계용 및 의료용의 특수구조인 것 또는 전동재봉 기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나. 휴대발전기(정격전압이 30V</p>	<p>2000년 7월 1일부터</p> <p>2002년 6월 30일까지</p>	<p>가. X · Y캐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이하인 것 또는 저항 캐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 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k\ \Omega$ 이하인 것)</p> <p>나. 전자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p>	<p>2000년 7월 1일부터</p>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이상 300V 이하이고, 정격 출력이 교류에 있어서는 3kVA 이하, 직류에 있어서는 3kW 이하인 것으로서 휴대가 가능한 중량이하의 것에 한한다.)</p> <p>다. 교류아크용접기(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 2차전류가 250A 이하인 것에 한하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비고)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p>		<p>(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 전압이 250V 이하인 것)</p> <p>다. 형광등용 캐패시터(용량이 0.1 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 kvar 이하인 형광등용의 것) 비고)100Hz 이하인 것에 한한다.</p>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가. 가정용 상호연결기기(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으로 극수가 5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 위치기구이외의 절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1)기구용플러그</p> <p>(2)기구용플러그받이</p>	<p>2000년 7월 1일부터</p> <p>2002년 6월 30일까지</p>	<p>가. 상호연결 커플러(전기기기 혹은 기타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 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p> <p>나.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 옥내용 또는 옥외</p>	<p>2002년 7월 1일부터</p>
<p>나. 가정용플러그 및 소켓아웃렛(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으로 극수가 5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치기구 이외의</p>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 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1)꽃음플러그 (2)콘센트 (3)코오드콘넥트보디 (4)멀티탭 (5)어댑터 (6)기타꽃음접속기 (7)기타나사접속기 (8)조인트박스</p> <p>비고)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은 제외한다.</p>		<p>용으로 사용되는 것)</p> <p>(1)일반플러그 및 콘센트 (2)퓨우즈내장형 플러그 (3)기기의 콘센트(전기기기에 부착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상호연결커플러를 제외한 것)</p> <p>(4)스위치내장콘센트 (5)어댑터(하나의 플러그와 하나 또는 복수의 소켓아웃렛이 결 합된 것)</p> <p>(6)인터록 및 스위치내장콘센트</p> <p>다.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 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이하, 정격전류 63A(나사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의 것)</p> <p>(1)일반스위치(매입형스위치의 매입박스를 제외한 스위치 박스에도 적용하고 코드가 달려있거나 인출용장치를 가진 스위치의 것)</p> <p>(2)전자식스위치(250V이하 16A 이하인 것)</p> <p>(3)리모트콘트롤 스위치</p> <p>(4)시간지연 스위치</p> <p>라. 케이블 릴(단상 250V 16A 이하, 삼상 440V 16A 이하의 것)</p> <p>비고)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p>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가. 소형퓨즈류(정격전류가 1A 이상 200A 이하(전동기용퓨우즈에 있어서는 그 적용 전동기의 정격용량이 12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류제한기용 퓨우즈 및 반도체 보호용 속동퓨우즈는 제외한다.) (1)관형퓨우즈 (2)통형퓨우즈 (3)기타포장퓨우즈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가. 소형퓨우즈 및 퓨우즈홀더(관형 · 초소형 · 모듈형 등으로 정격전류가 20mA 이상 200A 이하의 것) 나. 저전압퓨우즈(정격전류가 2A 이상 1,250A 이하의 것) 다. 온도퓨우즈(동작온도가 80°C 초과 280°C 이하의 것)	2003년 7월 1일부터
나. 고리퓨우즈(정격전류가 1A 이상 200A 이하(전동기용 퓨우즈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 용량이 12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류제한기용 퓨우즈 및 반도체보호용 속동퓨우즈는 제외한다.)		라.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의 것)	
다. 온도퓨우즈		마.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의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 · 과부하보호 · 단락 겸용보호 겸용의 것)	
라.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 (전동기용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67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은 제외한다.)			
마.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 전동기용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의 것,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 인 것은 제외한다.)</p> <p>비고) 정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 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p>			

절연변압기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가.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나. 가정용소형변압기(정격용량이 5kVA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의 것은 제외한다.)</p> <p>다. 기타 가정기기용변압기(정격 용량이 500VA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비고) 정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 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p>	<p>2000년 7월 1일부터</p> <p>2002년 6월 30일까지</p>	<p>가. 전압조정기</p> <p>나. 가정용 소형변압기</p> <p>다. 교류어댑터</p> <p>비고) 정격용량 5kVA이하의 것 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2002년 7월 1일부터</p>

전기기기류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가. 전기청소기(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나. 전기다리미(정격소비전력이</p>	<p>2000년 7월 1일부터</p> <p>2001년 6월</p>	<p>가. 전기청소기(진공청소기 · 물 흡입청소기 등으로 정격소비 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p>	<p>2001년 7월 1일부터</p>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다. 전기탈수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원심분리식인 것으로서 섬유제품의 탈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p> <p>라. 전기그릇세척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전동기를 갖는 것에 한한다.)</p> <p>마. 요리용레인지, 오븐류(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1)전기오븐 (2)전기곤로 (3)전기핫플레이트 (4)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 (5)기타조리용전열기구</p> <p>바. 전기세탁기(세탁시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전동기 또는 전자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p> <p>사. 전기면도기</p> <p>아. 전기토스터(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자. 전기마루닦기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차. 전기후라이팬(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카. 주방용전동기계류(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 전기녹즙기는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30일까지	<p>한다.)</p> <p>나. 전기다리미(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p> <p>다. 전기탈수기(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p> <p>라. 전기식기체석기 및 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p> <p>마. 전기레인지 · 전기오븐기기</p> <p>바. 전기세탁기(의류, 옷감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 이하인 것)</p> <p>사.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기</p> <p>아. 전기토스터 · 그릴</p> <p>자. 전기바닥청소기(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차.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용의 것)</p> <p>카. 전기보온기(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p> <p>타. 전기후라이팬 및 기타 전기식조리기기</p> <p>파. 주방용 전동기기(쥬우서, 쥬우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등으로 정격소비전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하. 전기액체가열기기 및 밥솥류(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p> <p>거. 전기담요 · 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p>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1)쥬우서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뜸질기,	
(2)쥬우서믹서		전기침대)	
(3)후드믹서		너. 전기온수기(끓는 젤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4)전기녹즙기		더. 피부 및 모발관리기(전기머리 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타. 액체가열기기류(정격소비전력 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려. 전기냉장 · 냉동기기(냉장 · 냉동기기, 콤프레셔로 구동되는 제빙기등으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	
(1)전기솥		며. 전자레인지(300MHz ~ 30 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 하는 것)	
(2)전기주전자		버. 전기시계(타이머 전용은 제외 한다.)	
(3)전기냄비		서. 적외선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 기(의료용은 제외한다.)	
(4)전기보온밥통		어. 가정용 전동재봉기	
(5)전기물끓이기		저.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6)전기약탕기		쳐. 전열기기(전기스토브, 전기 온풍기)	
파. 전열매트류(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커. 레인지후드	
(1)전기방식		터. 전기맞사지기	
(2)전기요		페. 전기 순간온수기	
(3)전기매트		허.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에어컨, 기타 콤프레셔가 내장 된 것)	
(4)전기카펫		고. 유체펌프(사용액체의 온도가 35°C 이하이고 정격소비전력이	
(5)전기장판			
(6)전열보드			
(7)전기뜸질기			
(8)전기침대			
하. 전기온수기(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거. 피부 및 모발관리기			
(1)전기머리인두(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모발건조기			
(3)모발말개(정격소비전력이 10 kW이하인 것에 한한다.)			
(4)기타 이용용 전열기구(정격소비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 한다.)</p> <p>너. 전기냉장 · 냉동기기(정격소비 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p> <p>(1)전기냉장고(정격소비전력이 700W이하, 유효내용적이 1,500ℓ이하인 것에 한한다.)</p> <p>(2)전기냉동고</p> <p>(3)냉장용 쇼케이스</p> <p>(4)냉동용 쇼케이스</p> <p>더. 전자레인지(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러. 실내용 전열기기</p> <p>(1)전기스토브(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2)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kW이하인 전열 장치를 갖는 것에 한한다.)</p> <p>(3)기타 전열기기</p> <p>머. 레인지후드</p> <p>(1)환풍기(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버. 전기맛사지기</p> <p>서. 전기순간탕비기(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어. 전기냉방기(전동기 정격소비 전력의 합계가 7.5kW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5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저. 유체펌프(정격소비전력이 1.5</p>		<p>1,5kW이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노. 전기건조기</p> <p>도. 전기프레스기(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기)</p> <p>로. 전기가열기기(납땜인두, 납땜 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 소성 도관용접기, 가정용 필름 용접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 제거기, 가열총, 권총형아크접착기)</p> <p>모. 전기온장고</p> <p>보.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 세척기)</p> <p>소.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스팀バス, 전기사우나バス, 사우나バス용 전열기, 스팀バス용 전열기)</p> <p>오. 전기표면세척기</p> <p>조. 어항 및 연못용 전기기기(관상 어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기포발생기)</p> <p>초.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 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p> <p>코. 아이스크림후리자(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토.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한다.)</p>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kW이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 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제외한다.)</p> <p>(1)전기펌프 (2)전기우물펌프</p> <p>처. 전기온장고(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커. 사우나용 전열기기(정격소비 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 한다.)</p> <p>(1)전기스팀바스 (2)전기사우나바스 (3)사우나바스용 전열기 (4)스팀바스용 전열기</p> <p>터. 수족관용 전기기기(정격소비 전력이 100W 이하인 것에 한하고, 관상어용 히터는 정격 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1)관상어용 히터 (2)관상어용 기포발생기 (3)전기기포발생기</p> <p>페. 아이스크림 후리자(정격소비 전력이 500W이하인 전동기를 갖는 것에 한한다.)</p> <p>허.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한다.)</p> <p>고. 공기청정기(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p>		<p>포. 욕조용 전기기포 발생기 호. 축열식 전기냉방기 구. 공기청정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누. 주방용전기기계(전기육저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p> <p>두. 자동판매기 및 전기냉수기</p> <p>루.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무.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p> <p>부. 가습기</p> <p>비고)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한다.)			
노.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수납장치를 갖는 것에 한하며, 승차권용인 것은 제외한다.)			
도. 전기냉수기(정격소비저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에 한하며 쥬우서 등 액체 음료용을 포함한다.)			
로. 송풍기류			
(1)송풍기(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는 제외 한다.)			
(2)선풍기(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모. 화장실용 전기기기(정격소비 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 한다.)			
(1)자동세정건조식 변기			
(2)전기변좌			
(3)전기훈증살충기			
보. 전기국수제조기			
소. 전기장판용발열선(정격소비 전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 한다.)			
오. 초음파가습기(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복수구조인 것은 제외 한다.)			
비고)정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안전인증대상품목

전동공구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가. 전기그라인더(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가. 전기드릴	2003년 7월
나. 전기샌다(정격소비전력이 1.5 kW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3년 6월 30일까지	나. 전기드라이버 다. 전기그라인더 및 포리셔 라. 전기 샌다.	1일부터
다. 전기드릴(정격소비전력이 1.5 kW이하인 것으로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다.)		마. 전기원형톱 바. 전기햄머	
라. 전기대패(정격소비전력이 1.5 kW이하인 것으로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다.)		사. 전기분무기 아. 전기금속가위 자. 전기테이퍼 차. 전기왕복톱	
마. 전기톱(정격소비전력이 1.5 kW이하인 것으로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다.)		카. 전기진동기 타. 전기체인톱 하. 전기대패 거. 전기잔디깎기 너. 전기못총	
바. 전기포리셔(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더. 전기트리밍기(라우터, 트리밍기 등의 것)	
사. 전기드라이버(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비고)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기타전동공구(정격소비전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한다.)			
비고)정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가. 텔레비전수상기(액정프로젝터를 포함하고 산업용 텔레비전 수상기는 제외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텔레비전수상기·모니터·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 안테나 증폭기	2001년 7월 1일부터
나. 비디오테이프레코더(편집과	2001년 6월 30일까지	(일명 부스터), 비디오카메라, 튜너, 편집기,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PC인터페이스 2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p> <p>다. 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브라운관을 갖는 것에 한한다.)</p> <p>라. 비디오폰</p> <p>마. 가요반주기</p> <p>바. TV영상프로젝터</p> <p>사. 앰프류</p> <p>아. 기타 음향기기</p> <p>비고)정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기, 앰프 및 리시버, 음성기록계 및 플레이어, 오디오 시스템, 앰프내 장형 스피커, 전자악기, 위성방송 수신기, 직류전원장치(오디오 및 비디오 응용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 게임 기구, 비디오폰, TV영상프로젝터, 개별용도를 조합한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기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의 것</p> <p>비고)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하며,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로 분류되는 비디오 응용기기로서 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KOLAS)에 의해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p>	

정보 · 사무기기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가. 모니터(키보드접속기가 있고 비디오시그널코넥터가 없는 것, 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인 것 또는 브라운관이 2이상인 것은 제외한다.)</p>	<p>2000년 7월 1일부터</p> <p>2001년 6월 30일까지</p>	<p>모니터(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인 것 포함), 프린터(정격소비전력이 600W이하인 것),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 직류전원장치(교류전원장치와 겸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p>	<p>2001년 7월 1일부터</p>
나. 프린터(정격소비전력이 600W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이하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프로타, 라벨, 그래픽 전용의 것은 제외한다.)</p> <p>다.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 k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라. 직류전원장치(교류전원장치와 겸용하는 것과 스위칭전원장치를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하며, 무선통신 기의 시험용인 것 및 기타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마. 무정전원장치(정격용량이 5 kVA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바. 스캐너 비고)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류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한다. 또는 스캐너에 대해서 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1kVA이하인 것), 무정전전원장치 (정격용량이 5kVA이하인 것), 스캐너, 개인용컴퓨터 및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젝션 장치(PC에 연결 하여 사용하는 것), 지폐 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플로터, 개별 용도의 기기를 조합하여 제조된 정보·사무기기, 기타 정보·사무 기기의 것</p> <p>비고)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하며, 전자파적합등록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로서 시험·검사기관공인제도 (KOLAS)에 의해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전자파적합등록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p>	

조명기기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가.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정격전압이 400V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가.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나. 램프홀더	2003년 7월 1일부터
나. 램프홀더(전등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전류가 50 A이하인 것 및 극수가 5이하	2003년 6월 30일까지	다. 형광등용 소켓 및 스타터 소켓 라. 조명기구 마. 방전램프형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치 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 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은 제 외한다.) (1) 키레스소켓 (2) 분기소켓 (3) 램프용리셉터클 (4) 방수소켓 (5) 키소켓 다. 형광등용소켓(정격전압이 1,000 V이하인 것으로서 전등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것 및 극수가 5 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 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 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 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은 제외 한다.)		바. 형광등용 안정기 사. 형광등용 전자식안정기 아. 형광등용 전자식스타터 자. 형광램프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카. 백열전구 타. 네온변압기 파. 조명기구용 컨버터 하. 전기소독기(살균 등으로 사용 하는 것)	
라. 형광등용스타터소켓(전등기구 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 전류가 50A이하인 것 및 극수 가 5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 스위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구 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방폭형 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은 제외 한다.)			
마. 조명기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사항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1) 형광등기구(일반조명용에 한 한다.)</p> <p>(2) 전기스탠드</p> <p>바. 안정기류(정격1차전압 (방전등용 안정기로서 변압식 이외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 600V이하 인 것으로서 적용방전관의 정 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1) 형광등용안정기(전등기구용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2) 수은등용안정기(전등기구용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3) 나트륨등용안정기(전등기구용 이외의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4) 살균등용안정기</p> <p>(5) 기타고압방전등용안정기</p> <p>사. 형광등용전자식스타터(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아. 전자식안정기류(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1) 전자식형광등용안정기(적용 방전관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 가 1,000W이하인 것에 한 한다.)</p> <p>(2) 전자식나트륨등용안정기(적용방</p>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전관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전력의 합계가 1,000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3)전자식수은등용안정기 (적용방전관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W이하인 것에 한한다.)</p> <p>(4)기타전자식고압방전등용안정기 (적용방전관의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00W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5)전자식네온변압기</p> <p>자. 형광램프류</p> <p>(1)형광램프(정격전압이 400V 이하, 정격소비전력이 110W 이하인 것으로서 일반 조명 용인 것에 한한다.)</p> <p>(2)안정기내장형램프(E형 베이스를 갖는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차. 네온변압기(정격용량이 500VA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카. 전구류(정격전압이 400V이하인 것에 한한다.)</p> <p>(1)고압수은램프(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하며, E형 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조명 용에 한한다.)</p>			

안전인증대상품목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p>(2)나트륨램프(정격소비전력이 1 kW이하, E형 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조명용에 한한다.)</p> <p>(3)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소비 전력이 1kW이하, E형 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조명용에 한한다.)</p> <p>(4)백열전구(정격소비전력이 1 kW이하인 것에 한하며, 베이스가 E형인 것으로서 일반조명 용의 것에 한한다.)</p> <p>(5)보울전구</p> <p>(6)소형전구(정격전압이 100V 이상 400V이하이고 E형 베이스중 E12, E14, E17 또는 E26 베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유리구의 형상이 구형, 가지형 또는 관형에 한하고 (1) 및 (5)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p> <p>(7)장식용 전구(정격전압이 100 V 이상 400V 이하이고 E형 베이스 중 E12, E14, E17 또는 E26 베이스를 갖는 것에 한한다.)</p> <p>비고)정격전압이 600V이하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p>			